

자료번호	A1-1996-0027
자 료 명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기업체 의견 조사

I.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1. 다음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기업 및 근로자 지원제도입니다.

1-1. 귀하께서는 각 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안다 ⑤ 매우 잘안다

1-2. 귀하께서는 각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구분	주요내용	1-1.내용 인지 정도					1-2. 필요성				
		전혀 모른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안다	매우 잘안다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고용안정사업	1. 휴업수당 지원금 경제상 이유로 소정근로일수 중 1/15 이상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급된 휴업수당의 1/2(대기업은 1/3)을 최대 150일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전직훈련 지원금 전직예정자에게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훈련기간 중 임금의 1/2(대기업은 1/3)과 훈련비용 전액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인 력 재배치 지원금 업종을 전환하여 인력을 재배치한 경우 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기업은 1/3)을 1년간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지 역 고용촉진 지원금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 신 증설한 경우 새로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기업은 1/3)을 1년간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주요내용	1-1.내용 인지 정도					1-2. 필요성					
		전혀 모른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안다	매우 잘안다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고용안정사업	5.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55세 이상자의 비율이 5% 초과시 초과고령자 1인당 매분기 9만원 지급: 근로자수의 15%(대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고령자수가 한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육아휴직 장려금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1개월에 근로자 1인당 월 12만원(대기업은 8만원)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직장 보육시설 지원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보육교사를 고용한 경우,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시설설치비용을 연 3%내외의 장기처리로 용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주 및 구직자에게 구인, 구직정보 제공, 직업지도, 직업 소개 등의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직업능력 개발사업	9. 사업내 직업훈련 지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훈련기종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지원 ※지원율: -자체훈련:전액(대기업은 80%) -위탁훈련:90%(대기업은 70%) -전직훈련: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교육 훈련지원	교육기관 및 지정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훈련 소요비용의 90%(대기업은 70%), 근로자 1인당 150만원(대기업은 100만원) 한도로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유급 휴가훈련 지원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기간 중 지불된 임금 및 교육비용 합계액의 90%(대기업은 70%)지원 ※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600만원(대기업은 400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주요내용	1-1.내용 인지 정도					1-2. 필요성					
		전혀 모른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안다	매우 잘안다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직업능력 개발사업	12.직업 훈련시설 장비장금 대부	사업주단체 25억, 사업주 10억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용자, -대부금리:연리 1%(대기업 은 2.5%) ※5년 거치 5년 상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교육 수강비용 대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 학 또는 재학중인 근로자에 게 요급 수강비용(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용자(연리 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실업자 채취직 훈련지원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 직한 근로자가 채취직 훈련 을 받을시, 훈련비용 전액 지원, 실업급여를 받지못한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액 의 50% 및 가족수당(4인 한도, 1인당 3만원)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고령자 등 수강 장려금 지원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직 업 교육훈련을 받을시 수강 비용의 90%를 지원(100만 원 한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실업 급여	16. 기본 급여	피보험자가 불가피하게 실 업을 당한 경우 이직전 임 금의 50%를 30~210일간 지급 -기본급여 수급자격자가 직 업훈련 수강시 훈련기간 동 안 최장 2년까지 기본급여 지급 -취직이 특히 곤란한 경우 60일까지 기본급여 연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조기 채취직 수당	기본급여 수급자격자가 기 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 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 취직한 경우 기본급여 미지 급분의 1/3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직업 능력개발 수 당	기본급여 수급자격자가 직 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수 당을 위한 교통비, 식대 등 을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광역 구 직 활동비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재취업을 위 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숙박료 등을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이주비	재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 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주비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2. 문 7에서 근로자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수를 감소할 계획입니까?

- ① 정리해고 등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 ②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 ③ 신규채용의 축소나 중단 등을 통한 자연감소를 도모한다.
- ④ 기타 ()

8. 1995년 1년 동안의 상용근로자 중 퇴직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명

8-1. 위의 퇴직자 중 회사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수
()명

9. 귀사업체는 근로자들의 이직으로 인하여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 문 10으로

9-1.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쟁업체나 타업종에 비하여 급여나 후생복지 수준이 낮아서
- ② 지역적으로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등 생활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 ③ 업종이 사양산업에 속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 ④ 근무환경 및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예, 3D업종)
- ⑤ 기타 ()

10. 귀사는 다음의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각지원금 또는 장려금별로 해당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구분	예	아니오
① 휴업수당지원금	①	②
② 전직훈련지원금	①	②
③ 인력재배치지원금	①	②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	②
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	②
⑥ 육아휴직장려금	①	②
⑦ 직장보육시설지원금	①	②

13. 귀사가 고용안정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골라 O표해 주십시오.

- ① 지원금 수준 및 기간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 ② 지원금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
- ③ 지원금 수급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 ④ 지원금 신청과 지원시점간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 ⑤ 업종별로 차등지급되어야 한다
- ⑥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 ⑦ 기타 ()

Ⅲ. 직업능력개발사업

14. 귀사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의무업체입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문 18로

문 15에서 문 17-2까지는 사업내 직업훈련 의무업체(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제외 업체)의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15. 귀사는 직업훈련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 ① 직업훈련의무비용 전액을 직업훈련 실시 등에 사용한다 → 문 16으로
- ②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 ③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직업훈련분담금만 낸다 → 문 15-2로

15-1.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훈련의무비용을 다 들어 훈련시킬 만한 필요성이 없어서
- ②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훈련생을 차출할 여유가 없었다
- ③ 정부가 인정해 주는 훈련비용이 낮아서
- ④ 직업훈련시설 · 내용 등이 정부의 훈련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 ⑤ 훈련수요를 충족시켜 줄 위탁훈련기관이 없었
- ⑥ 훈련생을 모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 ⑦ 기타(구체적으로) → 문 16으로

15-2.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직업훈련분담금만 납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업훈련 실시시의 비용보다 분담금이 적으므로
- ②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훈련생을 차출할 여유가 없어서
- ③ 직업훈련기준이 까다롭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많아서
- ④ 훈련수요를 충족시켜 줄 위탁훈련기관이 없어서
- ⑤ 훈련생 모집이 어려워서
- ⑥ 직업훈련 수요생이 오래 근속하지 않고 곧 이직하므로
- ⑦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없어서
- ⑧ 기타 (구체적으로)

16. 훈련과정·훈련기간·훈련시설·교재·교사 등에 대한 정부의 직업훈련기준이 귀사의 직업훈련 실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①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 ② 도움이 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문 17로

16-1.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훈련기준이 기술변화에 크게 되지기 때문에
- ② 훈련기준이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 ③ 기타 ()

17. 현행 사업내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직업훈련분담금을 고용보험료에 흡수하여 자율적인 사업내 직업훈련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면 향후 귀사의 교육훈련 인원은 현재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훈련 인원 전체 및 과정별로 ① 감소한다, ② 변화없다, ③ 확대한다 중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감소한다	변화없다	확대한다
교육훈련인원 전체		①	②	③
과정별 인원	① 양성훈련	①	②	③
	② 향상훈련	①	②	③
	③ 전직훈련	①	②	③

17-1. (감소한다고 응답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줄여서 실시하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서
- ② 교육훈련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감소하기 때문에
- ③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훈련비용지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 ④ 기타 ()

17-2. (확대한다고 응답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을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③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 ④ 기타()

20-1. (문 20에서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원제도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 ②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 ③ 지원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서
- ④ 지원금 수준이 낮아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 ⑤ 지원금을 신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 ⑥ 기타 ()

21. 귀사에서 향후 1-2년 내에 다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구분	활용가능성				
	① 전혀없다	② 없다	③ 그저그렇다	④ 높다	⑤ 매우높다
① 사업내 직업훈련지원					
② 교육훈련지원					
③ 유급휴가훈련 지원					
④ 직업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⑤ 교육수강비용 대부					
⑤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					

22. 귀사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지원금 수준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 ② 지원금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
- ③ 지원금 수급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 ④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사업내직업훈련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을 구분하지 말고 통합하여 동일기준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 교육훈련 종료후 바로 지급되어야 한다.
- ⑦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사업을 활성화한다.
- ⑧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탁훈련과정을 교육훈련기관이 개발하도록 한다
- ⑨ 기업의 주문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현장에 와서 실시하는 주문식 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 ⑩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 ⑪ 기타 ()

Ⅲ.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23. 귀사에서 가장 필요한 근로자 교육훈련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직업훈련생 모집에 의한 신류양성훈련
 ②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③ 사무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④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한 직무전환교육훈련
 ⑤ 생산직 사원에 대한 기능향상훈련
 ⑥ 관리·감독자훈련
 ⑦ 전문인력·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⑧ 기타 ()
24. 귀사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업훈련분담금이 더 좋다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더 좋다
25. 다음은 귀사에서 1995년에 실시한 교육훈련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교육훈련을 ① 실시한 경우, ② 실시하지 않은 경우 란에 O표해 주시고,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및 방법을 기재해 주십시오. 교육훈련방법은 '① 자체훈련, ② 위탁훈련, ③ 자체 및 위탁훈련' 중에서 골라 해당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교육훈련대상 및 내용	실시여부		교육훈련인원(명)	교육훈련방법
	실시	미실시		
1. 정식직원이 아닌 직업훈련생에 대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①	②		
2. 신입사원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업무교육	①	②		
3. 생산·기술·기능·노무직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24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교육훈련	①	②		
4. 사무·관리·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24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교육훈련	①	②		
5. 관리·감독자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교육훈련	①	②		
6. 전직예정자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수행에 필요한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①	②		

31-3. 31-1번 질문에 ② 또는 ③ 으로 응답하셨다면,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공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감독기관에 대한 두려움 등)
- ② 구직자에 대한 알선이 너무 늦기 때문에
- ③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구직자는 질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④ 공공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이 낮고 불친절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 ⑤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구직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 ⑥ 기타 ()

32. 현행 고용보험사업외에 귀사에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

V. 일반현황

33. 귀사의 사업장 개요를 기재해 주십시오.

사업장명	
주 소	
사업장 소재지의 특성	① 공단지역 ② 공단지역 외의 도시지역 ③ 기타지역
업 종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도소매 및 음식 ④ 운수, 창고 및 통신업 ⑤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⑥ 기타 업종()

34. 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95년 12월 말 현재) : ()명

34-1. 피보험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수 : ()명

34-2. 피보험자 중 여성근로자수 : ()명, 여성 피보험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 : 약()%

34-3. 1995년 중 육아 휴직자수 : ()명, 평균 육아휴직기간 : ()개월

35. 귀사의 근로자의 정년연령 : ()세

(정년이 직종·직급에 따라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적용받는 정년을 기재하십시오.)

36. 노조유무 : (1) 있음 () (2) 없음 ()